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82
----------	------

2024년 5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 :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4월 2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김진만)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액체납액 가산세 면제기준 상향에 맞추어 일반우편 송달금액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기존 '가산금' 제외에서 '가산세' 제외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
-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예산담당관 협조, 비용 미발생)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2. 8. ~ 2024. 2. 2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개정·시행으로 ‘가산금(이하 증가산금 포함)’이 ‘가산세’로 통합(가산세+가산금⇒가산세)한 사항을 반영하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

- 지방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를 지연한 경우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현 행 법률 제17768호, 2020.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 지방세 ----- -----.
15. ~ 21. (생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2. ----- 지방세 ----- -----.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 ----- ----- ----- ----- ----- ----- ----- -----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	----- ----. <단서 삭제> <삭 제>

- 개정(2023. 12. 29.)된 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舊 증가산금)를 면제하는 세액의 기준(납세고지서별·세목별)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한 사항을 반영하여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도 이 기준(30만원→45만원)에 일치시키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

-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이하 생략)

〈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현 행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 45만원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45만원 ----- -----.

- 법령 인용 조문의 현행화 및 조례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개편된 가산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024.2.13.)에 맞추어, 개정(2021.12.28.)된 법의 시행 시기를 연기(2022.2.3. → 2024.1.1.)하여 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2년 가까이 있었음에도,

- 근거 법 시행 이후 4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본 조례의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는바,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세기본법 부칙 개정 사항〉

- 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1.1. 시행 -

종 전(2020.12.29. 일부개정)	현 행 (2021.12.2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전단 생략) 제55조제1항 (후단 생략)의 개정규정: <u>2022년 2월 3일</u>	부칙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 ----- ----- 1. ~ 4. (생략) 5. (전단 생략) 제55조제1항 (후단 생략)의 개정규정: <u>2024년 1월 1일</u>

나. 세부 내용 검토

1)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 등(안 제3조제2항제4호)

-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체납액 전부(이하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 이를 직접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법 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산금’을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법 제55조제1항)로 개정하고,

* 법률 제17768호, 2020.12.29. 일부개정, 2024.1.1. 시행(부칙 제1조제5호)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③ ~ 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한편, ‘가산금’을 ‘가산세’로 통합한 법 개정 이유는,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유사한 제도의 중첩적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오해(이중 부과 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가산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금’ 등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한 것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2020. 12. 29, 일부개정) 〉

종 전	현행
<input type="checkbox"/>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	<input type="checkbox"/> 납부지연 제재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 일원화 및 용어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u>가산세로 통합</u> ○ 용어를 <u>납부지연가산세</u>로 변경 ※ 시행: 2024.1.1.

〈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개정 전			개정 후('24. 1. 1.시행)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1일 0.025%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미납·과소납부분 세액의 3%			미납·과소납부분 세액의 3%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납부·부과고지 전)	납부지연 가산세	매월 0.66%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가산금	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납부·부과고지 전)	
	증가산금	매월 0.7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매월 0.66%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문 정비를 통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법 개정으로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대상은 “본세(통합된 가산금 뿐 아니라 기존의 가산세까지 제외된 것) 기준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로 되어,

- 구청장에게 위임한 징수권을 환원받아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 재무국은 고액체납액 이관 기준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액(개정 전)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체납액(개정 후)으로 개정으로, 매년 약 296건, 35억 원의 체납액이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이관 대상에서 감소될 것으로 추계(5년 평균 이관액 1천 4백억원 의 2.5% 수준).

- 가산세와 가산금의 통합 취지가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이와 관련한 부수적인 제도*의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점, ‘고액체납액’

이관(징수권 환원) 기준액이 2013년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 체납처분비, 공과금, 납세의무 성립·확정, 지방세징수권잉 소멸시효, 납부기한, 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의 결정·경정 등

** 고액체납시세 이관 기준액이 2013년 상향(5백만원 ⇒ 1천만원)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

- 본 개정안에 따른 고액체납액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개정 법 체계와 적정한 “고액체납액”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재무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거 법이 개정된 지 29개월이 경과하고, 법 시행 이후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행태는 조례의 효력상실(법령과 조례의 불일치 등), 시민의 혼란, 조세 징수 주체의 혼란 등을 야기하는바, 재무국의 뒤늦은 조례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안 제7조제1항)

○ 안 제7조제1항은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고지서 1매당 현행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하려는 것으로,

- 법 개정*(2023.12.29.)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舊 증가산금*)가 면제 되는 기준금액(납세고지서별·세목별)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인상되었고,

*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일부개정, 2024.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

-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이하 생략)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 2024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 중

- 지난 24년간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납부지연가산세(舊 증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부과) 면제 기준(30만원 미만)과 일치시켜 운영해 왔고,
- 등기우편 송달(납세고고지서 등)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예산의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개정 전/후 우편비용 절감액(2023년 재산세 정기분 기준): 10억 3천만원

❖ 납부지연가산세(증가산금) 면제대상 기준금액 개정 연혁

- 지방세 : ('85) 5만원 → ('89) 10만원 → ('01~) 30만원 → ('24) 45만원
- 국 세 : ('84) 50만원 → ('08) 100만원 → ('22~) 150만원

- 다만,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로 송달 여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지서 송달의 입증 곤란에 따른 부과취소·재고지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고지 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비용(2023년 재산세 정기분 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 건당 30만원 미만		등기 고지서별 30만원 이상		일반 건당 45만원 미만		등기 건당 45만원 이상	
건수/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3,897	800,714	1,550	3,985,176	4,387	1,081,527	1,059
우편비용	1,559		3,874		1,755		2,648	
소계	5,433				4,403			

※ 일반우편(규격5g) 400원, 등기우편(규격5g) 2,500원

3) 자구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2조제1항)

- 안 제 4조는 선행 조문(제2조)에서 정의한 상위 법률의 약칭*을 반영하고,

* 본 조례 제2조(법령과의 관계) —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

- 안 제10조는 근거 법(제93조의2)에서 정의한 사항(선정 대리인)*의 반영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이의신청인(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포함)의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신청과, 대리인과 관련한 용어(“선정”→“지정”)를 개선하는 등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

- 안 제12조제1항은 조문의 간결성과, 법령 서술방식에 따라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쉽게 조문을 간략화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본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 <u>법</u> <u>제10조</u> ----- ----- ----- -----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 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 <u>과세전적부심사</u> <u>청구인</u> <u>또</u> <u>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u> <u>신청인등"이라 한다)</u> ----- ----- <u>대리인 지정</u> ----- ----- <u>시장에게 규칙</u> ----- ----- <u>지정 신청서</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③	-----	<u>이의신청인등</u> ----- -----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u>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	----- <u>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u> <u>원회를 둔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본 조문 정비 사항은 2021년 개정* 이후 3년여가 경과하도록 현행 규정 형태로 규정되어온 것으로,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조례 제7955호, 2021.3.25., 일부개정·시행

4) 기타(부칙)

- 부칙 안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 부칙 안 제2조는 구법과 신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종전 법에서 가산금 용어가 삭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 시행일(2024.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법 시행일 이후 종전 법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를 가산세로 보도록 적용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법질서로부터 새로운 법질서 이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바, 부칙 안 제2조의 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채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항제24호”를 “법 제2조제1항제23호”로, “가산금은”을 “가산세는”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로, “대리인의 선정”을 “대리인 지정”으로, “규칙”을 “시장에게 규칙”으로, “선정 신청서”를 “지정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 위원회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채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p> <p>1. ~ 3. (생략)</p> <p>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u>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 제외한다</u>)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단서 신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p>	<p>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법 제2조제1항제23호</u> ---- -- <u>가산세는</u> ----- ----- ----- <u>이하</u> ----- ----- ----- -----.</p> <p><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가. ~ 다.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 --- <u>법 제10조</u>-----</p>

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여 교부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45만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 -----
----- 대리인 지정----- 시장에게 규칙-----
- 지정 신청서-----
--.

② (생략)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의신청인등-----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